【사건번호 2018-011】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사건

1. 개요

o 피신청인 : 한국고전번역원

o 대상 공공데이터: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데이터

o 데이터 신청 목적: 인물 관계망 LOD 구축

2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

- o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"인물 관계망"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거부됨
 - 피신청인은 거부사유로서 이 사건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, 관련 사업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피 신청인의 제공거부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위원회의 판단을 구함

나. 피신청인

- o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, 관련 사업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한국고전번역원이 보유하고 있음
 - 다만, 이 사건 데이터는 수시로 수정·보완되고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이므로 제공이 불가하며, 관련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3년경에는 공공데이터로서 제공할 예정임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

o 피신청인은 1986년부터 주요 고전문헌을 수집하여 교감·표점·색인·해제 등의 정리과정을 통해 번역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원전정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음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 참조)

- 그 중 한국문집총간 간행사업은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저작된 역대 한국인의주요 문집을 수집, 정리, 표점, 영인하여 간행한 것으로 총 1,295종 500책으로 2012년 완간함
- 한국문집총간은 약 2억 3,720만자의 본문텍스트, 651,665건의 기사메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사*별, 문체**별로 색인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작업임
 - * 글의 제목 ** 시, 편지, 기행문 등 글의 장르
-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작업은 전기류, 서발류, 기문류, 서간류 및 통합본의 순서로 예정되어 있으며, 현재 전기류에 해당하는 자료가 정리되어 서비스 중임
 - ※ 올해 서발류의 편목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정보추출 및 상호검토 후 DB구축 예정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, 한국고전번역원 2018년 주요사업 설명자료 참조)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o "공공데이터"는 "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"로서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이하 '공공데이터법') 제2조제2호),
- o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한국고전번역원법상 정해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DB로 구축되어 웹서비스되고 있는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

다.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

o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,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 -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을 종합하면, 이 사건 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며, 현재 데이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
-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으며, 피신청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 및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o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'공공데이터법'이라 한다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여야 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
 - 다만,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「저작권법」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)
- o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, 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를 종합하면,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관련 사업참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의 거부사유는 타당하지 않으며,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함
 - 다만, 피신청인이 사업참여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받지 않았고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하되 2차적저작물은 작성할 수 없음

-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정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, 출처와 함께 해당 데이터가 피신청인의 웹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정·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함

5. 조정결과

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료